"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,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"

# 대 한 체 육 회

수 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 목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

1. 관련: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-546(2018.1.31.),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-461(2018.2.7.)
2.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 및 최저 학력제를 확인하는 '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'를 붙임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

○ 적용대상: **초·중·고 학생선수***

*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(정의):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

○ 적용시기: **2018. 3. 1. ~**

○ 적용대회: **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**

○ 주요 변경내용

| 구분 | (기존) 2017학년도 | (변경) 2018학년도 |
|---|---|---|
| 주요내용 | ▪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횟수(2~4회)는 2017학년도까지 적용하고 이후 폐지 | ▪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, 연간 수업일수의 1/3범위*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<br>*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인 학교는 63일간, 191~192일 학교는 64일간 허용 가능 |

□ 협조 요청사항

○ 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시 '학교장 확인서(붙임 참조)' 필수 제출서류로 적용

붙임 1. 교육부 공문 사본 1부.
2.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사본 1부.
3. 학교장 확인서(2018.3.1.적용) 1부. 끝.

대한체육회장

수신 시도체육회장, 회원종목단체장_정회원, 회원종목단체장_준회원, 회원종목단체장_인정단체

주무 **전민제** 부장 전결 02/08 **류미경**

협조자 지역체육부장 **임석천** 종목육성부장 **김종수**

시행 학교체육부-531 ( 2018.02.08. ) 접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-266 ( 2018.02.09. )

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(방이동, 대한체육회) / http://www.sports.or.kr

전화 02-2144-8234 /전송 02-2144-8193 / mjjeon@sports.or.kr / 공개